

# 몰래카메라 촬영행위 근절돼야

전문가 칼럼

정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기기의 발전은 우리에게 극도로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으나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누구든지 손쉽게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영상기기의 혁명을 가져왔다. 평을 듣고 있지만 몰래카메라의 범람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며,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및 그 탈의실, 공중목욕탕, 각종 화장실 등지에서 주로 행해진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에스컬레이터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만일 누군가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을 한다면 이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 초상권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술하면, 촬영수단은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므로 스마트폰은 물론 초소형카메라나 일반카메라도 당사자의 허락이 없는 한 몰래카메라의 수단이 되기에 충분하다. 촬영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이므로 오로지 신체만이 해당된다. 아울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어야 하므로 허락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규정하고 있다.